

의안번호	2217484
의 퇴 인	황희의원
회 답 일	2026.6.12.
추계번호	26D0371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6,000만원(연평균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안 제5조)	12	12	12	12	12	60	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	제3조에 따른 국가의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자녀 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함(제2항)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복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 (학비 지원)	국방부장관은 군인자녀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학비 지원의 기준·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3	안 제7조 (맞춤형 교육지원)	국방부장관은 온라인 학습지원, 청소년 캠프 및 특화 프로그램, 심리·진로 상담 등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음(제1항)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의 내용·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5	안 제8조 (교육 편의 지원)	국방부장관은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자녀를 위하여 군인자녀 기숙사 운영 및 통학 차량 지원 등 교육 편의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교육 편의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9조 (군인자녀 국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	국방부장관은 자녀 교육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군인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군인자녀 국립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군인자녀 국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	○	-
2	안 제6조 (학비 지원)	-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7년까지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보육을 실현할 계획임 초·중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며, 고등학생 역시 무상교육이 적용되고 있음 대학생의 경우, 일부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어 제정안에 따라 재정소요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 미비로 추계가 곤란함
3	안 제7조 (맞춤형 교육지원)	-	온라인 학습지원, 청소년 캠프/프로그램 등은 이미 국방부 예산사업으로 실시중임 - 온라인 학습지원은 현재 민간기관 협약을 통해 실시중으로, 2026년 기준 1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며, 청소년 캠프/프로그램은 2026년 기준 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군인가족지원 사업) - 심리·진로 상담은 교육부에서 시행 중인 Wee 프로젝트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학교 Wee 클래스, 교육지원청 Wee 스쿨, 교육청 Wee 센터 연계 운영)와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청소년 1388) 등의 지원을 받고 있음
5	안 제8조 (교육 편의 지원)	-	기숙사 운영, 통학차량 지원은 이미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예산사업으로 실시중임 -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자녀를 위한 기숙사 사업이 시행중이며, 2026년 기준 예산은 8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통학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2025년 국토교통부,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 판단 및 협의 하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단위 권역별 통학 차량 운영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며 지방관할 교육청의 학생통학지원 조례를 근거로 통학 차량 지원을 실시중임
6	안 제9조 (군인자녀 국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	-	2024년 3월 교육부와 상호협력 업무체결 후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2에 의거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 재정지원 사업(1개 학교당 연간 1억원)을 수행 중(2026년 예산 기준 1개 학교 1억원)이며, 2030년까지 2개 학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은 군인자녀가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수립·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 추계에서는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
- 군인자녀 학비지원(안 제6조)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고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이 적용되고 있음
 - 다만, 대학생의 경우, 국방부에서 현역 군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1학년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2026년 예산 기준 2,800명×100만원=28억원)¹⁾을 지급하고 있음
 - 제정안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미비로 현

1) 코드: 2239-646의 내역사업

-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해 추계에서 제외함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제정안에 따라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15명 중 민간위원을 10명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복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라 연간 회의개최횟수는 4회(분기별 1회)로 가정하고, 위원장인 국방부차관을 포함하여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을 5명으로 가정하고 민간위원을 10명으로 가정함
 - 추계기간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회의참석수당 30만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028~2032년

(단위: 건, 명,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당 민간위원 수	10	10	10	10	10	—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당 회의개최건수	4	4	4	4	4	—
회의참석수당 단가	0.3	0.3	0.3	0.3	0.3	—
추가재정소요(A)	12	12	12	12	12	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 제정안에 따라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6,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	12	12	12	12	12	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